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
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
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

제안연월일	2021. 12. .
제안자	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안연월일 : 2021. 12. 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(2022. 1. 13. 字 시행)됨에 따라 해당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일괄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(안 제1조 ~ 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생략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결산검사위원
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

제1조(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) 구미시 결산
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”를 “제150
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”로 한다.

제2조(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) 구미시의회 사무
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및 제91조”를 “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3조(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
한 조례) 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2조”를 “제51조”로 한다.

제4조(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) 구미시의회
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4조”를 “제42조”로, “제35조”를 “제39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영 제33조”를 “영 제36조”로 한다.

제5조(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)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전단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)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”를 “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”를 “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9조”로 한다.

제7조(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)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를 “제40조 및 같은 법 시

행령 제36조”로 한다.

제8조(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)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1조”를 “제49조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 제15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구미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5 1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□ 구미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 2조 ----- ----- 제3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의정활동비”이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영 제3 6조-----

비를 말한다. 3. (생략)	-----. 3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□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본문 개정 2019.10.14.>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검직신고)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,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 ②·③ (생략) ④ 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⑤ (생략)	제5조(검직신고) ①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제2항----- ----- -----.
	⑤ (현행과 같음)

□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6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심의·의결에 관여한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	제16조(징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9조----- -----.

□ 구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-----

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·	-----
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	-----
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-----
목적으로 한다.	-----.

□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· 조사 시 불출석 ·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
과태료 부과 · 징수 조례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· 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9조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부과대상) 과태료는 구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.	제2조(부과대상) ----- ----- ----- 법 제49조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